

집합투자기구 규약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: HDC 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2. 효력발생일 : 2021.01.29.

3. 주요변경내용 : 운용역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</u>.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</u>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② ~ ④ <생략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</u>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<생략>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</u>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생략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</u>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</p>	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 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</p>

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<생략>	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<현행과 같음>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생략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<생략> 1. ~ 2. <생략> <신설> ② ~ ⑤ <생략>	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<현행과 같음> 1. ~ 2. <현행과 같음> 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② ~ ⑤ <현행과 같음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신설>	<부칙> 이 투자신탁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 :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운용전문인력변경	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<u>홍호덕</u> → <u>박정훈</u>)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가. 투자대상 1. HDC퇴직연금평생직장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⑥ 집합투자증권 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	가. 투자대상 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1. HDC퇴직연금평생직장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⑥ 집합투자증권 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

		<p>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. <이하 생략 ></p> <p>2.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⑦ 집합투자증권</p> <p>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. <이하 생략 ></p>	<p><u>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</u>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 <이하 생략></p> <p>2.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⑦ 집합투자증권</p> <p>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 <이하 생략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 <p>(5)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</p>		<p><u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</u></p>	<p><u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 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	<p>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 사항 반영</p>	<p>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...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<신 설></p> 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</p> <p>②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⑤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로 평가</p>	<p>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...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<u>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.</u></p> 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</p> <p>②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)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⑤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로 평가</p>
<p>14.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이익 배분</p>		<p>① <u>세액공제(2015.1.1.부터)</u>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</p>	<p>① <u>세액공제</u>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</p>

<p>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(2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	<p><u>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u></p>	<p><u>특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	
<p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수익자 총회 등</p> <p>(2)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(5) 투자신탁의 합병</p>	<p>자본시장법(시행령)개정사항 반영</p>	<p>②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은</u>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<이하 생략></p>	<p>②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은</u>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<이하 현행과 같음></p>
<p>2. 집합투자기구 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임의 해지</p>		<p>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</p>	<p>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</p>

		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자산운용보고서		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...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단서 생략>	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...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
(3)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	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...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단서 생략>	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...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

[간이투자설명서] : 운용역 변경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

<끝>.